

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7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14. 8.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에 의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, 우리 군 조례와 규칙에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 유출·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등록 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시급한 조항과 별지서식의 개선 필요

○ 법적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
2. 주요내용

가. 우리 군의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이 있는 조항과 별지서식을 일괄개정 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

나. 평창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항과 별지서식 56개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 등의 대체수단으로 변경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~ 제24조의2(별첨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15. 5. 4. ~ 5. 25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 영향평가 심사결과 : 원안동의

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조례의 별지서식 중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등록번호란 개정) 평창군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에 따라 별표 “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”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제1항,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‘주민등록번호’를 ‘생년월일’로 한다.

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

연번	부서별	자치법규명	정비대상 별지서식	개정사항
1	의회	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	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2			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3			별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4			별표 청원소개의견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5			별표 청원철회요구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6	문화관광과	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	별지 제1호 서식 이효석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7			별지 제2호 서식 이효석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8	주민생활지원과	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	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9		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	별지 제1호 서식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0			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1		평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	별지 제1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2			별지 제1호 서식 화장장려금 지급대장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3		평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	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·제식 및기재사항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4		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	별지 제1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5			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동의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6			별지 제3호 서식 출산축하금 신청대장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7			별지 제4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급대장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8		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	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19			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장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
연번	부서별	자치법규명	정비대상 별지서식	개정사항		
20	종합민원과	평창군 건축조례	별지 제1호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21			별지 제2호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22	자치행정과	평창군주민투표조례	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23			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24			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25			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26			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27			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28			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29			평창군포상조례	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
30			재무과	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	별지 제1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31					별지 제2호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32	경제체육과	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	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33			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34	환경위생과	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	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(변경)신고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35		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	별지 제3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36		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	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조사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37			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38			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39			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		

연번	부서별	자치법규명	정비대상 별지서식	개정사항
40	도시주택과	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	별지 제1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(변경)허가 및 신고대장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41			별지 제3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42			별지 제4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43			별지 제5호 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44			별지 제6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45			별지 제9호 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46			별지 제12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47			별지 제13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48			별지 제14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49			별지 제15호 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50	보건의료원	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.징수 조례	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51			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(변경) 통지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52			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53			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54		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	별지 제1호 서식 입원 약정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55	기술지원과	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	별지 제1호 서식 위탁운영 지정(연장)신청서	주민등록번호 ⇨ 생년월일

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평창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별지서식만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 추계서 제외 대상임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진영
연락처	(033) 330 - 2464

관계 법령 발췌

□ 개인정보보호법
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6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"고유식별정보"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
2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② 삭제

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삭제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